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
2023. 9. 19(화)

제24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
(보건소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2023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360호
- 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9. 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9. 5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금천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.

3. 추경예산안 편성규모

가. 총 괄

(단위 : 천원)

구	분	예산액	기정액				2회추경 (안)
	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
계		818,763,965	734,968,659	710,356,657	21,882,868	2,729,134	83,795,306
일반회계		785,953,596	711,465,630	687,067,128	21,669,368	2,729,134	74,487,966
특별회계		32,810,369	23,503,029	23,289,529	213,500	0	9,307,340
	의료급여기금	682,598	590,000	590,000	-	-	92,598
	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	591,400	591,400	591,400	-	-	-
	주차장	31,536,371	22,321,629	22,108,129	213,500	-	9,214,742

나. 일반회계

- 세입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	2회추경(안) (B)	비고
		소계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	
계	785,954	711,466	687,067	21,670	2,729	74,488	
자체재원	154,038	162,357	162,357	-	-	-8,319	
지방세	111,722	125,066	125,066	-	-	-13,344	
세외수입	42,316	37,291	37,291	-	-	5,025	
의존재원	481,436	480,894	456,495	21,670	2,729	542	
지방교부세	20,826	20,826	19,261	1,565	-	-	
조정교부금등	147,859	147,859	139,823	8,036	-	-	
보조금	312,751	312,209	297,411	12,069	2,729	542	
보전수입등	150,480	68,215	68,215	-	-	82,265	
순세계잉여금	127,619	68,215	68,215	-	-	59,404	
보조금사용잔액	20,701	-	-	-	-	20,701	
보조금등변환금	2,160	-	-	-	-	2,160	

- 세출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예산액 (A+B)	기정액				2회추경(안) (B)	비고	
		소계(A)	당초예산	간주처리	1차추경			
계	785,954	711,466	687,067	21,670	2,729	74,488		
일반회계	정책사업	623,150	578,570	554,138	21,651	2,781	44,580	
	재무활동	44,107	11,868	11,868	-	-	32,239	
	행정운영경비	118,697	121,028	121,061	19	-52	-2,331	

4.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현황

가.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분	예산액		기정액		2회추경(안)	
		구성비		구성비		증감률
총계	261,051,325	100.00 %	230,523,178	100.00 %	30,528,147	13.24 %
민원감사담당관	249,755	0.03 %	262,004	0.04 %	△12,249	△4.68 %
소통담당관	3,726,091	0.46 %	3,808,650	0.52 %	△82,559	△2.17 %
행정안전국	152,238,874	18.59 %	150,721,372	20.51 %	1,517,502	1.01 %
행정지원과	110,666,556	13.52 %	109,886,759	14.95 %	779,797	0.71 %
자치행정과	11,637,887	1.42 %	11,339,673	1.54 %	298,214	2.63 %
교육지원과	25,187,385	3.08 %	24,684,112	3.36 %	503,273	2.04 %
주민안전과	4,021,787	0.49 %	4,043,779	0.55 %	△21,992	△0.54 %
민원여권과	725,259	0.09 %	767,049	0.10 %	△41,790	△5.45 %
기획경제국	84,610,491	10.33 %	56,689,919	7.71 %	27,920,572	49.25 %
기획예산과	57,404,599	7.01 %	32,740,042	4.45 %	24,664,557	75.33 %
지역경제과	16,750,157	2.05 %	14,920,695	2.03 %	1,829,462	12.26 %
일자리청년과	8,882,574	1.08 %	7,465,242	1.02 %	1,417,332	18.99 %
재무과	469,596	0.06 %	464,972	0.06 %	4,624	0.99 %
세무1과	472,128	0.06 %	467,531	0.06 %	4,597	0.98 %
세무2과	631,437	0.08 %	631,437	0.09 %	0	0.00 %
보건소	20,226,114	2.47 %	19,041,233	2.59 %	1,184,881	6.22 %
보건정책과	3,785,868	0.46 %	4,166,739	0.57 %	△380,871	△9.14 %
건강증진과	13,063,287	1.60 %	11,448,016	1.56 %	1,615,271	14.11 %
의약과	2,734,073	0.33 %	2,756,765	0.38 %	△22,692	△0.82 %
위생과	642,886	0.08 %	669,713	0.09 %	△26,827	△4.01 %

나. 보건소 주요 추경예산안

(단위 : 천원)

연번	부서명	세부사업명	사업개요	예산액	기정액	2차 추경(안)
1	보건정책과	독산1동 복지시설 (보건지소·데이케어센터) 건립	- 건강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독산1동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 인프라 보강 - 기간 : 2017.11~2024.6. - 위치: 한내로 69-15 (독산주공13단지 내)	21,890	-	21,890
2	보건정책과	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응	- 코로나19 대응 위기단계 하향으로 관련예산 감소정	1,144,317	1,848,783	-704,466
3	건강증진과	만성질환 관리지원 건강증진 사업	-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치료와 교육 - 고혈압 당뇨병 교육 상담실 운영 확대	42,360	24,473	17,887
4	건강증진과	치매안심센터 운영	- 위치 : 독산1동 주민센터 7층 - 기간 : 2023.10.~12. -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화단 조성 공간 누수로 보수 공사	30,000	-	30,000
5	건강증진과	취약계층 어르신 영역별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	- 방문건강관리 어르신 및 취약계층 대상 영역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	16,500	-	16,500
6	건강증진과	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	- 성인지적 접근을 통해 준비된 임신으로 세대 건강 도모	61,142 시 56,500 구 4,642	56,500 시 56,500	4,642 구 4,642
7	건강증진과	맞춤형 방문 건강관리	- 가정방문을 통한 1:1 건강관리 서비스	193,110 국 23,682 시 11,829 구 157,599	193,110 국 23,682 시 18,629 구 150,799	0 (재원변경)
8	의약과	선별진료소 운영	-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운영 위탁운영으로 인건비 감소정	15,000	162,168	-147,168
9	의약과	자동심장충격기 관리	-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설치비 명시이월에 따른 당해연도 예산 감소정	51,500	64,000	-12,500

5. 검토의견

- 보건소 세출예산은 예산서(안) 245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정 예산에서 총 11억 8,488만 1천원이 증액 되었음.
- 주요 편성 내역은
 - (보건정책과) 건물준공 전 인테리어 착공협의 완료로 독산1동 한내 보건지소의 인테리어 실시설계 용역비 2,189만원 증액, 코로나19 단계 하향 및 방역 조치 전환으로 역학조사원 등 필요인력 감소 및 방역물품·소모품 등 사용량 감소로 7억 446만 6천원 감액함.
 - (건강증진과)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연장 및 고혈압·당뇨병 교육 상담실 운영 확대로 1,788만 7천원 증액, 치매안심센터 화단 방수공사비로 3,000만원 증액,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으로 1,650만원 증액,
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및 1개월분 보수 추가확보로 464만 2천원 증액함.
 - (의약과) 코로나19 단계 하향 조정으로 코로나19 검사 전문 기관 위탁운영으로 선별진료소 인건비 미집행분 1억 4,716만 8천원 감액,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이 2023년으로 명시이월됨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 조정으로 1,250만원 감액함.
-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보건지소 인테리어 설계용역비, 치매안심센터 화단 방수공사비,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 및 시비 변경 내시로 인한 반영분 등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계 법령 1부.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지방재정법

[시행 2023. 5. 16.] [법률 제19031호, 2022. 11. 15., 일부개정]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[전문개정 2011. 8. 4.]